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11. 26.

社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討報告

1. 경 과

의안 제252호로 2013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적용범위를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다. 수탁자의 계약의 체결, 의무사항, 운영지원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 안 제8조)
- 라.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의 해지에 대하여 규정 (안 제10,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영등포구립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탁 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구민의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O 주요내용을 보면

구립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탁기관과 계약의 체결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하여 시행한 것으로써 1997년 이후 민간위탁이 확대되었으나 민간수탁기관 선정시 기준·방법 등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고 재위탁의 장기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위탁시설의 사유화 논란,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수탁기관 선정 관련 기준·방법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제정안은「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립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과 관련한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는 등 위탁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34조]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 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 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 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